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10. 10.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10월 10일(화) 14:00~17:48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78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3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78호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79호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외국계 금융투자업자들이 한국시장에 와서 비즈니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음. 제179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0호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당해 회사가 자진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당해 회사는 등록업무에 대해서 자진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부분이 나와 자산운용감독국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한 사건임. 과태료·과징금 부과절차가 끝나면 자진폐지 절차가 진행됨.

○ (위원) 자진폐지 신청을 한 것이 언제쯤인지?

- (보고자) 올해 1월18일임.
- (위원) 자진신고 중인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수준에 대한 검토할 요소는 없는지?
- (보고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개 이상 위반사항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임. 첫 번째 제4항은 금융위 신고를 한 번 안했으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인터넷 공시를 5회에 안했으므로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위반으로 건당 1,200만원을 5회 위반해서 6,0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동일한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50% 이내에서 감경한다는 조항에 따라 50% 감경하여 3,000만원이 되었음.
- (위원) 첫 번째는 어떤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더 이상 조정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회사가 원래는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 반기별로는 계속 해 온 것임. 반기별로 계속 해 왔던 것이고 분기를 놓쳤던 것인지?
- (보고자) 영업보고서는 냈는데 공시신고하는 것을 안 한 것임. 방식이 다른 것임.
- (위원) 저는 안건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안에 있어서 혹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함.

- (보고자) 전례에서도 영업보고서상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산정기준에서 감경을 했지, 그것을 공시했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는 않았음. 그런 부분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과태료산정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음.
- (위원) 사실 이 회사가 위반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이고, 두 번째는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음.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위반의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것이 훨씬 더 중할 것으로 보임. 신용공여를 하지 말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를 한 것이니까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위반의 정도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과태료나 과징금 수준을 보면 오히려 두 번째 위반에 훨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음. 물론 그런 정황을 감안하여 50% 감경을 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반의 중요도에 비해서 과징금의 수준이 조금 더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 변동이 없었고 또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감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보고자) 저희가 과태료·과징금 산정기준과 이전 선례에 따

라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함. 과징금은 원래 한 3억 2,8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었는데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다 보니까 3,400만 원이 된 것이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건별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항별로 건별 과태료 부과하고 그 항별로 부과된 과태료가 10% 이내 감경을 하다 보니 현재 좀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음. 이런 부분은 안건을 올리는 검사국 입장에서 저희의 여지(room)는 솔직히 없는 상황임.

○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됨. 과태료나 과징금 계산 과정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음.

○ (위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될 때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관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지금 ♠♠♠는 최대주주 ○○○○○○○○○○○○○○○○○○○의 특관자인지?

- (보고자) 대표이사임.

○ (위원) 그러니까 특관자 겸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주)의 대표이사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니까 ♠♠♠는 신용공여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고, 또 한편으로는 임원으로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보고가 안 되었다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음.

- (보고자) 그런데 임원에 대해서는 1억 원과 자기 연봉 중 작은 금액 내에서 대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항을 달리하여 풀어주고 있음.
- (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증선위원님들께 정보(information)를 좀 드려야 되겠음. 어떤 동일한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를 병과하는 조문이 있는데 병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융위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음.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판과 현재의 판결에 따라서 과징금·과태료를 행정 당국에서는 기본적인 병과가 가능함.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본다면 금감원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자진폐업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한 점들이 감안되어 위원님들 의견처럼 어느 정도 감경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이 부분 관련하여 자산운용과 의견 있는지?
- (보고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조항은 사실 모든 업권에 걸쳐서 절대적인 건전성 기준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저는 오히려 그 과징금 규모가 충분히 감액된 만큼 이 정도라면 감내 가능해야 되는 범위라고 생각함.
- (위원장) 금감원 국장님,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주)가 자진폐업 과정에서 현재 예고한 처분대로 과징금·과태료를 다 납부하

졌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 (보고자) 맞음. 그런 상태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 건 같은 경우에는 병과 문제와는 조금 다른 이슈(issue)라고 생각이 됨. 저희가 대주주 신용공여로 과징금 3,4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대주주인 회사에 대해서 4억 1,300만 원이 신용공여된 것에 대해서 과징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고의무 위반과 공시의무 위반은 이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주)의 대표이사 겸 합자회사, 대주주의 대표이사인 ♠♠♠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신용공여된 부분에 대한 신고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병과 이슈(issue)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됨.
- (위원장) 자진폐업 과정이 지금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는 모르 겠지만 한 번 더 논의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니면 오늘 처리 하는 것이 이 폐업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회사 입장에서는 오늘 증선위 회의에서 과징금 금액이 결정된다면 바로 납부하고 폐업 절차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 오고 있음. 그런데 저희가 이 건은 금융위 까지 가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위원) 회사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 (보고자) 작년에만 한 7,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났었고, 그 전에는 한 2년 동안 2~3억 원 정도의 이득이 났었고 작년에도 한 3억 원 정도의 배당을 했었음.

○ (위원) 납부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그 정도의 납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4시 24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제180호 안건은 등록업무 자진폐지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위반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이라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제180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1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2호 『(주)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회사와 (주)OOOOO, (주)◇◇◇◇◇◇과 (주)●●●●●● 사이에서 체결한 위 콜옵션·전환사채권에 관한 취득 및 처분관련 계약서가 모두 존재함. 두 번째, 회사는 위 전환사채권에 관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또한 존재함. 세 번째, 위 전환사채권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이 오간 점 또한 관련 증거로 입증됨.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가공자산 계상 등 회계장부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 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회사는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을 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시어 위법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 또는 ‘과실’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위원) 회사가 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했다가 이것을 (주)●●●●●●에 왜 또 판 것인지?

▶ (진술인) 그 당시에 이런 실무적인 일을 처리했던 실무진들이나 대표이사 등이 모두 퇴직하여 저희로서도 말씀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위원) 그렇다면 전환사채를 (주)●●●●●●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는지?

▶ (진술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과 (주)○○○○○○에서 직접 이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님. 다만, 회계장부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거나 누락 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최초에 ■■■이 (주)◇◇◇◇◇◇과 (주)○○○○○○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인수계약서와 이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다른데 예를 들면 전환사채(CB) 전환청구기간이 오리지널은 만기 한 달 전까지이고 이후에 나오는 계약서들을 보면 만기까지 되어 있음. 전환사채(CB) 매매가 될 때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계약조건이 그대로 명기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요건인 전환청구기간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음.

▶ (진술인) 알겠음. 그런데 저희가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은 '고의'는 아니었다는 점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자) 회사가 애초에 이런 거래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 (진술인) 그 부분도 지금 경영진들이나 실무진들은 대부분 그 당시 경영진과 실무진과는 다르기에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움.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3호 『OOOO(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조치예정자는 OOOO(주)의 최대주주인 ◎◎◎ 측이 요구하는 무리한 자금조달 일정에 최대한 맞추어 자금을 조달하려 노력하다보니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인 바, 주식 담보제공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치예정자가 OOOO(주)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실은 오히려 조치예정자가 그만큼 OOOO(주)를 인수할 의사가 진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 할 것임. 조치예정자가 OOOO(주)를 인수하지 못한 것은 ◎◎◎과 합의 도중 ◎◎◎이 갑자기 OOOO(주)의 감사의견, 상장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OOOO(주)에 55억 원의 자금을 납입하라는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이 사전에 어떠한 고지도 없이 OOOO(주)에 대한 회생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임. 조치예정자는 2022년 12월경부터 OOOO(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이 당시에도 회계사로부터 OOOO(주)가 재정적으로 건전한 기업이라는 답변을 회신 받은 적이 있음.

또한, 조치예정자는 2023년 3월10일경부터 일주일간 회계실사를 준비하고 ▲▲▲▲ 등 제지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 전무를 영입하려 하는 등 진지하게 ○○○○(주)을 인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음. 세 번째로 조치예정자는 ○○○○(주) 경영진이 회생인가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생인가신청서 접수 전날까지 만나 ○○○○(주) 인수를 위한 합의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였음. ○○○○이 조치예정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회생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안 뒤에는 조치예정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조치예정자가 ○○○○(주)의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치예정자는 ○○○○(주)에 대한 회생인가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알기 직전까지 ○○○○(주)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음. 그리고 조치예정 사실에 기재된 바와 달리 조치예정자가 이 사건 주식을 전량매도한 사실이 없고 매도된 주식 중 3분의 2 가량, 즉, 약 600만 주는 근질권자인 대부업체가 조치예정자에게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근질권을 실행하여 반대매매 방식으로 매도한 것이었음. 따라서 위와 같이 대상 주식이 매도된 사실만으로는 조치예정자가 ○○○○(주)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 없이 매매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관련 공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조치예정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 조치예정자는 위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혜량하시어 조치예정자에게 최대한 관대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 ●●●씨는 진실된 의사로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려고 했는데 자금을 대여해 준 대부업체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갑자기 반대매매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진짜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금을 조달해 준 대부업체에서 반대매매를 하는 바람에 원래 내 의사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인지? 원래 인수해서 경영할 의사가 있었는지?

▶ (진술인) 당연히 있었음.

- (위원) M&A를 하실 분이 대주주 지분을 팔아서 주식취득자금을 대출하면 그것이 M&A인지? 정말 회사를 경영할 목적으로 M&A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진술인) 원래 2,000만 주 중에서 한 50만 주 정도만 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머지 돈은 조달해 줄 사람이 있었고 안전한 돈으로 하려고 했었음.

-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정말 그것을 다 팔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든 일단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었고 바로 이렇게 장내매도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을 안 넣어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취지인지?

- ▶ (진술인) 그러함. ○○○ 회장 쪽에서 모든 사채업자를 다 접촉했던 것 같음.
- (위원) 알겠음. 하나 더 여쭙보면 그 당시 주식 팔린 것이 아까 변호인께서 반대매매로 팔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반대매매가 맞는지?
- ▶ (진술인) 맞음. 일단 대부업체와 계약한 것은 3월13일부터 일부 조금씩 판다는 것이었는데 돈을 주자마자 다음날 ○○○ 회장이 저와 관계없이 반대매매를 맞아서 2,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1,320원까지 떨어졌음. 그런데 사채업자가 900원 기준으로 해서 빌려준 돈이 150%가 한 1,360원 됨. 그러니까 1,360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매매 조건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원래대로 반대매매 아니었다면 다음주, 그러니까 13일 이후 14일, 15일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40억 원 빌려준 것 중의 일부를 조금씩 판다는 것이었음. 그래서 그것은 반대매매가 된 것임.
- (위원) 반대매매 기준가가 얼마인지?
- ▶ (진술인) 1,350원쯤 됨.
- (위원) 반대매매 과정에 본인의 의사가 전혀 개입된 바는 없는지?
- ▶ (진술인) 처음에 두 번 판 것은 반대매매 몰랐음. 그다음에 남은 물량을 팔 때만 저한테 물어봤고, 나머지는 하한가 맞았을 때 첫날 3월8일 오후에 이미 일부를 저와 관계없

이 팔았고, 3월9일 오전에 팔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팔았는데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봐서 나머지 ○○○○주식을 가져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일부 팔아달라고 한 것임.

○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판매한 것은 없다는 말씀인지? 자발적으로 판매한 것도 있으신지?

▶ (진술인) 그러함. 약 400만 주까지는 자발적으로,

○ (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400만 주는 판매하신 것인지?

▶ (진술인) 맞음. 팔아달라고 사채업자한테 얘기했음.

○ (위원) 그런데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면서 주식을 받자마자 매각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됨.

▶ (진술인)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가 2,000만 주 이상을 받아오는 것이었는데 약 400~500만 주, 원래는 그만큼도 안 팔려고 했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렇게 팔게 된 것임.

- (참여자) 주식을 취득하실 때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참여자) 주당 얼마의 차이로 취득하신 건지? 반값에 취득하신 건지?

▶ (진술인) 그래서 급하게 한 것임.

- (참여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서 반대 매매까지 되었는데 처분했을 때 전량 매도하고 시세차익이 9억 원 정도 난다는 것이 애초에 취득할 때 반 가격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차액이 그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 (진술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여금 원금 플러스 이자 일부만, 그때 급한 돈 빌린 것에 대해서만 주담을 하고 나서, 원래대로 하면 주식의 일부를 주담하면 나머지 돈은 주담하는 것으로 대부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었음.

- (참여자) 그러면 취득 자금 전부 자체 자금인지?

▶ (진술인)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함. 그다음에는 사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상장사 등에 부탁한 것이 있었음.

- (참여자) 그러면 혹시 공시하는 내용 중에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차용금이라고 공시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공시 자체를 안 했는지? 만약 했다면 자기자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사채라고 했는지?

▶ (진술인) 죄송함. 공시는 그때 이후로, 원래 그 뒤에 살펴 봐야 되는데 공시하러 ▼▼▼와 다른 직원을 보내고, 그 뒤에 이 사고가 나서 시끄럽다 보니까 공시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음. ○○○○과 ▼▼▼ 쪽, 저희 쪽 대응하는 컨설팅 직원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진술인)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음. 이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적으로 제가 꼭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이 주가가 폭락하거나 회생 들어가거나 거래정지된 것은 과연 제가 주식을 팔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3월6일 만날 때 이미 반대매매 맞고 있었고 수요일에 계약할 때 이미 또 반대매매 맞았기 때문에,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판 것에 대해서는 ○○○○ 회장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정산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런 소액주주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씨는 지금 부정거래 혐의인데, 자조심 자료에서도 자세하게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의 기재를 한 문서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여기에 거짓의 기재를 한 문서가 3월8일 공시된 내용인 것이고, 그러면 공시의 주체가 ●●●인지?
- (보고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 밑에서 근무하는 ▼▼▼라는 인물이 있는데, 3월8일 저녁에 ●●●, ▼▼▼가 ○○○○(주) 사무실에 가서 회사의 공시담당자인 ◆◆◆ 상무와 같이 이 공시자료를 만들어서 공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음. ◆◆◆ 상무의 진술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음.

○ (위원) ●●●씨의 지시 내지는 책임 하에 여기 허위공시된 내용을 이용해서 ●●●씨가 이득을 얻었다고 해석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저희는 그런 근거로 보고 있음.

○ (위원장) 검찰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큰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자조심에서 있었던 ●●●과 ○○○ 간의 공모가능성, 범죄수익 은닉가능성에 대한 수사 필요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시의 허위성 부분에 대한 의율 법조에 대해서 위계 포섭 부분까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찰과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검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음. 제183호 안건은 원안대로 검찰에 통보하되,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셔서 관련 서류를 보완 내지 검찰과 추가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42호 『OOO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43호 『2023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15시 52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 의결안건 제184호 『(주)OOO 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제가 지인인 조합장 CCC씨 때문에, 그분은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분과 제가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제 아내한테 그 종목을 전달해서 여기를 샀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음. 그 회사 구조상 모든 딜(deal)을 할 때 50:50으로 함.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전환사채(CB)를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빌리고 받은 조합에 들어감. 그래서 회사가 자기 돈이 아닌 조합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받을 받아서 그 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절대 알려주지 않음. 그것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조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 절대 알 수가 없고, 이 회사가 결정이 난 것도 원래는 다른 회사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되어서 부랴부랴 일요일에 만나서 급하게 이 회사도 딜(deal)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음.

○ (위원) (주)○○○ ○○과 관련된 구주 매매 및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혀 들은 바 없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하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자조합 자체가 블라인드형으로 운용됐기 때문에 대상 회사(target company)가 알려지면 장외에서 주식을 사서 무임승차(Free-riding)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했지만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이신지?

▶ (진술인) 조합원은 안 들어갔음. 그때 저한테는 투자권유는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음.

○ (위원) 투자권유도 안 받으셨다는 것인지?

▶ (진술인) 솔직히 이것이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조합이 저한테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조합에 들어오라는 얘기도 없었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아내 분께서는 본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했다는 취지이신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래도 부부간이면 진술인의 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돈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는 것 아닌지?

▶ (진술인)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월급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음. 자금이 오고 간 것도 거의 없음.

○ (위원) 배우자께서 ☆☆☆☆☆☆☆☆☆에 참여한 투자자들과 어느 정도 지인관계가 있으신지?

▶ (진술인) 전혀 없음.

○ (위원) 전혀 모르는 분들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배우자께서 인수대상 후보가 됐던 (주)△△, 그리고 (주)○○○ ○○ 주식을 인수 결정이 될 즈음에 대량으로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그런 결정을 하셨을지?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 (진술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 ○○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 것은 투자권유에 의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음. 문자나 업체들, 1년에 300만 원인가 하는 그것에 가입해서 종목을 계속 매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이라는 것은 저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함.

○ (위원) (주)△△의 거래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맞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았다는 정보는 AAA씨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주식전문가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가져도 되고 지켜볼만한 회사라는 전문가 개인 의견이었음. ○○○ ○○(주)라는 회사는 저도 이미 알고 있던 기업이기도 했고 이 의견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 ○○(주)라는 회사의 재무확인도 하고 차트분석도 한 후에 투자하려고 배팅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음. 전문가의 방송내용을 찾아내서 제출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남아 있는 영상은 없었음. 유료방송 사이트 가입비 결제내역인 2019년 9월19일 99만 원과 연장한 내역도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한 후에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축하메시지 문자내용도 찾아내서 제출하게 되었음. 그리고 첨부하자면 그 당시 전문가가 추천했던 것 중에서 ♡♡♡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계속 상승을 하면서 20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것을 제가 놓친 상태였음. 그렇기 때문에 이 ○○○ ○○(주)라는 종목을 더 잘 잡으려고 집중했던 기억이 있음. 그 당시 제 계좌 내 집중종목은 2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한 종목에 그렇게 배팅한 것도 있었고 400종목 이상 트레이

딩(trading)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1종목에 10억 원 이상도 보유 중임. 종목을 단타도 하고 또는 장기트레이딩을 하면서 개인투자전문가 신청까지도 했으며 비중도 더 늘리면서 현재에 이르렀음.

○ (위원) 주식 전문투자자로서 이렇게 주식 거래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 (진술인) 주식투자 전문가 신청을 한 것은 2019년 이후로 신청했고 그전에는 전문투자자까지는 아니었고 전업으로 투자하고 있었음.

○ (위원) 전업투자자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 (진술인) 10억 원 가까이 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그즈음 앞뒤로 시작했음.

○ (위원) 원래 증권사나 관련 분야에 근무를 하셨는지?

▶ (진술인) 그것은 아니었고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위원) 투자하신 그 돈은 누구 돈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술인 자금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자금인지?

▶ (진술인) 둘 다임.

○ (위원) 이번 (주)○○○ ○○ 주식에 투자한 재원은 진술인의 자금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자금인지?

▶ (진술인)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이었음.

○ (위원) 11월 중순 경에 (주)△△과 (주)○○○ ○○ 주식을 매수 하셨는지?

▶ (진술인) 맞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주)△△은 주식 트레이딩(trading)을 했던 기억은 남.

○ (위원) 2019년 11월12일과 13일에 (주)△△ 주식을 71,000주 정도 매수했다가 곧바로 14일과 18일에 전량매도하셨음.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이라는 회사 또한 (주)○○○ ○○이 인수를 계획하고 있던 회사 중 하나였음.

▶ (진술인)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몰랐음.

○ (위원) 그렇다면 11월12일과 13일에 71,000주를 매수했다가 곧바로 매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 (진술인)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 그렇게 한 주식은 굉장히 많음. 그전에도 (주)♡♡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도 한 3억 원 정도 배팅을 했다가 30분만에 하락을 치는 바람에 그것도 그날 바로 뺀 주식도 있음. (주)△△도 마찬가지임. 제가 트레이딩(trading)을 할 때 차트를 보고 들어갔을 때는 단타형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들어갔다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빼는 경우가 있음.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trading) 매매를 많이 했음.

○ (위원) (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는지?

▶ (진술인) 그 당시에는 대부분 차트매매를 많이 했음. 차트를 보고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크로스타임(cross time)일 때 많이 트레이딩(trading)을 하는 상황이었을 것임.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금감원에 질문 드릴 내용이 좀 있음. 첫째는 이 구성 요건 관련해서 저희가 대량 취득 실시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보고 있으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대량 취득 실시 정보에 해당하려면 경영참가 목적이고 10% 이상 취득 처분이거나 최대주주 변경을 초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량보유 보고에 해당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주)○○○의 유상증자 참여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면 AAA씨가 (주)○○○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 보시는 것인지?

- (보고자) 경로는 30년 지기인 CCC로부터, CCC는 대표조합원임. 대표자인 CCC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전달경로를 그렇게 보고 있음.
- (위원) 그렇다면 AAA이 준내부자가 맞는 것인지?
 - (보고자) 조합의 투자권유를 받고 있는,
 -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대량 취득 정보는 구주 거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 ○○의 유상증자 참여정보가 아닌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취득한 것은 구주 전환사채(CB)양수도이지, 유상증자 참여는 아닌데, (주)○○○ ○○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AAA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 인지? 만약에 이분이 준내부자가 되려면 (주)○○○ ○○의 임직원이었거나 (주)○○○ ○○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한지?
 - (보고자) 동 건은 단순히 조합이 상장사를 인수한 형태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여 (주)○○○ ○○의 최대주주로부터 (주)○○○ ○○의 구주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인 것이고 전략적 투자자(SI)인 (주)□□□ 등이 동 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이 세트(set)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CCC 측은 자기들이 상장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인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 이 사람들은 투자

수익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우리도 참여한다, 거기에 참여해서 당신도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유상증자의 규모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겠지만 누가 인수한다는 것 정도의 정보는 CCC를 통해서 들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임.

- (위원) 그러면 CCC도 전략적 투자자(SI)인 (주)□□□ 등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대표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크게 봐서 '교섭 중인 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준내부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조합원으로 투자권유 받았다고 해서 조합원이 직접 그 회사와 교섭을 한 것은 아닌데, 이 사람도 투자권유 과정에서 정보를 들은 사람 아닌지?

- (보고자) 경영권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그 주식을 매매하는 당사자로서 투자조합에 참여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례에서도 그 경우에는 '교섭 중인 자'로 처리를 해 왔던 것으로 생각됨.

- (위원) 이렇게 되면 AAA씨 같은 경우에는 준내부자로서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제가 볼 때는 AAA씨가 1차 정보수령자, BBB씨가 2차 정보수령자이거나 또는 둘 다 2차 이후에 수령된 것처럼 보일 것 같음.

- (위원)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 지금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제3항제4호, AAA씨를 계약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AAA씨 같은 경우에는 CCC씨로부터 단순히 투자권유만 받은 것이고, 투자조합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준내부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일한 의문이 있음. 혹시 과거에 이와 같이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으로 봐서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함.

- (보고자) 2019년도에 저희가 처리했던 ◇◇◇ 주식의 불공정 거래에서 조합의 투자권유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대상자에 대해서 준내부자로 적용한 사례가 있음.

- (위원) 투자권유만 받았지,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투자권유를 받고 그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 자체를 계약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으로 판단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의문점을 제기하셨던 사안이

사실 자조심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음. 동 사안이 2019년에 벌어진 것으로, 사실관계 규명이나 혐의소명을 금감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쉽다는 표현을 했음. 지금 이 건이 검찰고발이 아닌 통보사항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사안인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음. 금감원이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조심을 거쳐 증선위에 상정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사당국에 보내 보강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규명을 하는 현재의 안전대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는 검찰고발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술인의 나름 확신에 찬 진술들을 감안해서 증선위나 자조심 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하지만 자조심 위원들은 이 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수사당국에서 판단해서 할 정도는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원안대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보강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정을 했던 사안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나 여러 가지 의구심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무엇이 더 적절하고 좋은 것인가 함께 고민해 주셔서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함.

- (참여자) 그냥 보수적으로 법문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준교섭자 관계가 떨어져버림. 그러면 다음 단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리적 해석이지, 이 정보와 이 조합원 간에 그것이 안 되는데 같이 이 안에 다 들어간 준내부자로 보려면 다른 사정이 더 조사(finding) 되어야함.

- (위원장) 여기 수사기관에 참고사항으로 보내는 내용도 많이 적시가 되어 있음.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수사기관에 참고사항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주혐의자로 나오는 AAA과 BBB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처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리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 (보고자) 일단, 2차 수령자 이상이라고 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봐야 될 것 같음. 그런데 오늘 처리할 수는 없음.
- (위원장) 금융위 과장님은 어떠신지?
- (보고자) 말씀하신 사안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보고자) 담당자로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처리할 때 그런 중요정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AAA을 준내부자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했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선례에서도 이렇게 일련의 M&A 과정에서 하나의 계약서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가 진행되고 그 안에 유상증자로 새로운 최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렇게 신주를 인수하는 자와 직접적인 조합원으로 투자권유를 받은 자 사이에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준내부자로 보아 저희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주체로 본 사례가 있었고, 그런 선례에 입각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일련의 과정 속에 이렇게 조합투자에 참여하려고 했던 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준내부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했었음. 다만, 그런 배경에 대한 문구를 미공개정보에 대해 실시할 때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실 때는 직접적으로

내부자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계약 내용이나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도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 중심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경영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관련되어 직접 안 했을 뿐이지, 이런 M&A Deal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나마 참여하려고 했던 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준내부자로 판단한 것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됨. 말씀하셨듯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한다면 앞서 주협이자들의 혐의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보내는 자들 중에서 준내부자라고 볼 수 있는 자들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혐의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는 없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내부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판단이 맞다고 한다면 그 선례에 따라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논하기 보다는 현재 혐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함. 그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셨으면 함.

- (위원장) 여러 모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규명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면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동 안건은 오늘 증선위에서 보류할 테니까 당초 금감원 원안대로 수사기관 통보하는 방안과 AAA, BBB에 대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다음 증선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위원장) 제184호 안건은 보류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85호 『에코캡(주)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86호 『하나금융지주(주)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고민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함. 아울러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음. 저희가 그간의 수탁증권회사가 아닌 주문 주체인 경우 동기를 ‘중과실’이나, ‘과실’이나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이것이 이례적인 실수냐 아니면 시스템적인 실수냐, 예를 들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냐는 것을 이런 기준으로 구분해 왔던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 같은 경우에는 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안이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도 계속 무차입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중과실’로 하신 이유는 시스템적인 실수인 것 같음. 단순착오나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우선, 수탁사에서 위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음. 이 계좌가 공매도 미실현 확약 계좌는 아니었음. 통상적으로 수탁사는 공매도 미실현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제출될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 계좌는 그런 미실현 확약을 하지 않은 계좌여서 기본적으로는 공매도 주문인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계좌임. 그리고 Email로 주문을 접수 받아서 □□□□□□□□ 직원이 제출을 했는데 그 수탁사 직원은 시장가 주문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그런데 위탁자는 몰랐음. 500주 취소해 달라고만 했고, 그것을 알려주었다면 400주만 취소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고, 위탁자가 “500주를 취소하고 500주를 다시 내 달라”고 하면 “추가로 100주가 더 있느냐?”는 말을 했어야 됨. 그런데 주의의무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측면에서 ‘중과실’로 본 것임.

○ (위원) 좀 더 사실관계 이해를 위해서 보면 □□□□□□□□이 여기도 그렇게 확약이, 미제출 확약이 되어 있는 회사인 줄로 착각을 했다는 것인지? 저희가 직접 회사를 문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소명하고 있는지?

- (보고자) 미실현 확약 계좌로 착각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확약은 하지 않았지만 공매도 주문을 상당기간 제출한 적이 없다고 소명함.

○ (위원) 매도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인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저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음. 이것이 원행위자보다 주문을 수탁 받아서 처리한 증권사에게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조치인지 하는 의문이 하나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반의 중요도는 수탁사인 증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기준으로 위반의 중요도를 판단하게 되면 과징금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위탁자의 공매도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고 또 중요도를 판단할 때는 수탁자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판단한다면 사실은 정보가 불일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있음.
- (보고자) 수탁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선위에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겠음.

(17시 32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제185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제186호 안건에서 ZSP International에 대해서는 증선위의 과징금 감경 선례에 따라서 위탁범위 초과 주문에 대하여 80%의 추가감경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1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수탁증권사인 □□□□□□□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위탁자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별도로 해 주시고, 그 논의결과에 따라 □□□□□□□에 대한 동건의 과징금 부과방안을 별도로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동 □□□□□□□□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방안에 대해서 제반정황이라든지, 위탁자와의 형평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제재방안을 별도로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자조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과실'의 경우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 후 □□□□□□□□에 대해 재심의 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음.

- 의결 제185호는 원안의결하고, 의결 제186호는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의결 제185호는 원안의결, 의결 제186호는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87호 『(주)씨유박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지난 9월20일 제16차 증선위에서 (주)●●●●●●●●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투자조합 투자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업계의 오인, 회사의 자진신고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을 30% 감경한 사례가 있음. 동일하다고 생각이 됨.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이견 없음.
- (위원장) 제187호 안건은 투자조합의 투자자 수 산정에 관한 업계의 오인과 회사의 자진신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30% 감경하여 1,68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